

메타버스확인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4. 09. 11.

개정 2024. 11. 18.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메타버스 자율규약」 제23조에 따라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메타버스확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메타버스확인분과의 구성) ① “메타버스확인 분과위원회”(이하 “메타버스확인분과”라 한다)는 이 운영규정 및 「메타버스 자율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분과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위원회 위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4. 메타버스산업·교육·언론·정보통신·공학 등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거나 활동한 이력이 있는 자 등으로서 메타버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② 분과장은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메타버스확인분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에 소속된 자로서 분과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장 및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분과장 직무의 대행 등에 관해서는 「메타버스 자율규약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12조를 준용한다.

⑥ 분과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분과위원이 아닌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메타버스확인분과의 운영) ① 분과장은 필요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분과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분과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분과위원회는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분과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분과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와 상정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분과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분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 소속 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분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신청을 한 자(변호사 등 변호인을 포함한다)를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업무의 범위) 메타버스확인분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1. 제6조에 따른 심의
2. 심의 기준, 가이드라인 등 제·개정
3. 메타버스확인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 건의
4. 기타 분과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심의 기준 등의 마련) ① 메타버스확인분과는 특정 메타버스가 기능형 메타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② 메타버스확인분과는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심의 기준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심의 기준을 검토한 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위원회는 확정된 심의 기준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심의 기준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심의 신청) ① 협약사, 비협약사 중 규약 제27조에 따라 협회와 별도의 약정을 맺은 자(이하 “비협약참여사”라 한다)는 특정 메타버스가 기능형 메타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메타버스 확인 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심의 환경 구현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아래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설명 자료
 - 가. 메타버스의 목적, 주요 기능 · 내용
 - 나. 주요 이용자

- 다. 서비스 제공 방식(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에 관한 정보)
 - 라. 메타버스가 전용기기에서 구현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기의 사양 및 사용방법(관련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
 - 마. 메타버스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 정보
2. 대리인이 심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별지 제2호 서식)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

제7조(분과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분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특정 메타버스등의 당사자 또는 공동권리·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특정 메타버스등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특정 메타버스등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중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특정 메타버스등의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각 당사자는 분과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메타버스확인분과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메타버스확인분과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분과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분과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내용 변경) 신청인은 심의 기간 중에 특정 메타버스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메타버스확인분과에 알려야 한다.

제9조(신청 취하) 신청인은 신청 취하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을 취하 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의결) 메타버스확인분과는 특정 메타버스등이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심의·의결하는 경우 의결 내용 및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분과위원이 그 의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통지) ① 메타버스확인분과는 의결 결과를 신청인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메타버스확인분과는 심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특정 메타버스등을 운영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 메타버스확인분과의 의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이의 사유를 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능형 메타버스확인 심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 번호	접수 일자
1. 신청인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1-1.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 시 기재하며, 위임장<제2호 서식>을 함께 기재하여 첨부)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2.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 (※별지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	<input type="checkbox"/> 교육·학습·훈련형 메타버스 <input type="checkbox"/> 의료·건강관리형 메타버스 <input type="checkbox"/> 전시형 메타버스 <input type="checkbox"/> 관광형 메타버스 <input type="checkbox"/> 판촉·홍보형 메타버스 <input type="checkbox"/> 기업 업무형 메타버스 <input type="checkbox"/> 산업 기술형 메타버스 <input type="checkbox"/> 시청·관람·공연형 메타버스 <input type="checkbox"/> 소셜네트워크형 메타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요 내용 및 설명 자료	<input type="checkbox"/> 메타버스의 목적, 주요 기능·내용, 주요 이용자, 서비스 제공 방식(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에 관한 정보), 메타버스가 전용기기에서 구현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기의 사양 및 사용방법(관련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 메타버스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 정보,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에 대하여 설명
본 신청인은 위와 같이 기능형 메타버스확인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input type="checkbox"/> (인)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위 임 인 (신청자)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수 임 인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위임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변호사 <input type="checkbox"/> 법정대리인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4촌이내 친족 <input type="checkbox"/> 임직원 (직위 : _____)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전자우편	

- 본인(위임인)은 위 수임인을 대리인으로 지명하고 메타버스확인 심의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인)

수임인 (인)

메 타버스 자율 규제 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위임인과 수임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는 메타버스확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수집·이용 목적 : 심의 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 사실관계 조사 등 메타버스확인 심의를 위한 업무 수행
 -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전자우편주소, 주소 및 신청내용
 - ※ (신청인이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인과 관계, 주소, 전자우편주소
 - 보유 및 이용 기간 : 심의 절차의 종료 후 5년
 - 동의 거부권 및 거부시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이름: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4호 서식]

기피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사건번호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취지	메타버스확인분과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아래의 분과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합니다. * 기피 할 위원 :
기피사유	
첨부서류	기피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각 1부

메타버스확인분과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메타버스 확인 심의 신청 취하서

접수 번호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위 신청인이 신청한 메타버스확인 심의 신청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하합니다.

- 신청취하 사유 :

二〇一九年

신청인

(인)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 귀중

[별지 제6호 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인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사유	※ 별지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각 1부

이의신청인은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성명
(대표자)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 귀중